

## NH Bank legal brief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동향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논의 -

2022, 6, 24,

#### - 요 약 -

- ▶ 최근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
-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은행의 <u>규제형평성 측면</u>에서 대응 전략 검토할 필요
  - ①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종지사와 은행 간 규제형평성
  - ② 빅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제 빅테크와 은행 간 규제형평성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진전이 없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입'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이번 리걸브리프에서는 은행의 대응 전략 마련관점에서 전급법 개정안에 담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u>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논의 배경

2020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금법 전면개 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 업자(이하 '종지사')란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1

국회에서도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윤관석,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의 발표와 유사한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였습니다. 종지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유럽<sup>2</sup>, 싱가포르<sup>3</sup>등의 해외 사례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u>종지사 도입을 구체화한 전금법 개정안</u>은 빅테크·핀테크 업계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으나, <u>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는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u> 양쪽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은행과 종지사 간 규제형평성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준수

'<u>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 참여의 내용과 수준에 비례하여</u>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국제적 수준에서 핀테크·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식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sup>1</sup>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해주고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현재 은행과 제휴로만 계좌개설 가능)

<sup>2</sup>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2015)은 전자화폐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 2009)을 통해 규율하던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이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sup>3</sup> 싱가포르는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 2019)을 통해 다양한 전자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급결제기관(Payment Institution) 도입



정부와 국회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지사의 경우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을 이유로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종지사에게 광범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지사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라이센스 하나만으로 개별적인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모든 전자금융업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종지사가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용카드사처럼 이용자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전금법 개정안이 '형식적'으로는 종지사의 여·수신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지사는 이용자에게 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이용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따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종지사가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여신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u>다만 종지사에 대한 규제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종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성격을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u>. 종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u>사실상 수신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u> 예를들어, 종지사는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은행의 수시 입·출금 계좌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지사가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해 리워드 형태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자 지급 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은행과 빅테크 간 규제형평성 : 빅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제 마련 필요

종지사의 출현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미치는 타격은 소규모 핀테크 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u>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에 대한 은행 규**</u> 제 우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은 빅테크가 금융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핀테크보다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정도입니다. 외부청산 의무란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외부기관(금융결제원 또는 한국은행)을 통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존 개정안은 기업규모, 거래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외부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되는 기업규모, 거래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외부청산의무가 부과되는 빅테크의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외부청산 의무 제도가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화하여 자금세탁 위험 등을 예방하기 의도로 마련되었지만, 은행 등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가포르는 규모가 커지면 비금융기관에 대해 은행과 차별화된 규제상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하여 빅테크가 은행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급결제서비스법은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지급결제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 '주요지급결제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두 개의 라이센스를 마련해두고 일정 거래 규모를 초과하는 지급결제기관은 주요지급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지급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은행에 예탁 또는 신탁해야 할 의무,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되던 계좌 개설 서비스를 비금융기관(종지사)에게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금융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마련될 전금법 개정안이 ① 종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② 빅데크에 대해 충분히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2** 02. 2080. 8741

**1** 02. 2080. 8745

**2** 02. 2080. 8739

@ hwonpark

@ eunho\_noh

@ jeyun8835

@nonghyup.com

@nonghyup.com

@nonghyup.com